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72
----------	-------

제출년월일 : 2019. 5.
제출자 : 송바우나 의원 외 2명

1. 개정이유

- 조례에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 규정하는 것은 법적효력이 없는 재기재에 불과한 것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 및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 1991. 4. 15. 지방의회 개원 당시 내무부의 "준칙"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임.
- 증인 등의 여비 지급사항은 개정된 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개정하며,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반복 규정은 삭제 및 정비
 - 행정사무조사의 발의 및 계획서 작성 등 운영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41조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현행 제3조)
 - 감사·조사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은 「안산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현행 제4조, 제5조, 제9조)

- 감사조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증인선서, 증인의 보호 사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와 중복된 내용은 삭제(현행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 출석요구에 대한 관계공무원 불출석 통보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7조 및 제41조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현행 제18조)
- 감사조사의 공개의 원칙, 제척과 회피, 기밀 주의의무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48조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현행 제20조~제22조)
- 감사조사에 대한 결과 처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와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현행 제24조)
 -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안 제13조)
 - 증인 등의 여비 지급 기준은 개정된 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를 준용하도록 개정(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1, 2

4. 예산수반사항 : 붙임3(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5.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4
- 관계법령 : 붙임 5

[붙임 1]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사무감사 시기) 안산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

제3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계획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의 실시 장소
2.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3.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명단
4. 제출요구 서류 목록

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영 제40조에 따른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 제5조(증언 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게 하지 않는다.

- 제6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4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그 밖에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 제5조의2, 제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증언 등의 범위, 방식)** ①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증인 등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해당 증인 등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진술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 제8조(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변호인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여비 등 비용지급)** ①제4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1. 시 소속공무원
 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 ②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이하 “여비”라 한다)는 일비 및 교통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숙박비, 식비로 한다.
- ③여비 중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교통비 및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④여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로 산정한다.
- ⑤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 영 제50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고발) ①의회는 제4조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③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접수시킨다.

제13조(과태료)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와 같이 부과할 수 있다.
②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의회가 증인에 대한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선서나 증언의 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
2.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사실

-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 ⑤ 시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내용과 부과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1. 출석요구 불응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400 ~ 500
나. 출석요구 불응 1회	300 ~ 400
2. 증언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300 ~ 400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	200 ~ 300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50 ~ 200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	100 ~ 150
3. 선서거부시	100 ~ 150
4. 서류제출 불응시	
가. 서류제출 불응 1회	100 ~ 150
나. 서류제출 불응 2회 이상	200 ~ 300

(비고)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 전체 또는 일부 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 거부를 말한다.

소관	의회사무국
입 안 자	시의원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감사) ①의회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p> <p>③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p> <p>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 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2조(행정사무감사 시기)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제40조, 제41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p>
<p><신설></p>	<p>제3조(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계획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또는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실시 장소 2. 대상기관 및 대상사무 3.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명단 4. 제출요구 서류 목록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자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시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p> <p>⑥본회의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p> <p>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삭제></p> <p>(참조)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40조, 제41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p>
<p>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제2조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p> <p>②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삭제></p> <p>(참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1조</p>
<p>제5조(소위원회등)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삭제></p> <p>(참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p>
<p>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안산시</p> <p>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하부행정기관</p> <p>3.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p> <p>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p> <p>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안산시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안산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p> <p>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p>
<p>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p> <p>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p> <p>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참조)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p>
<p>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참조)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p>	<p><삭제></p> <p>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p>
<p>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시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통합</p>	<p>제4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영 제40조에 따른 본회의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②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포함한다.</p> <p>참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항</p>
<p>제12조(증언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p> <p>③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p>	<p>제5조(증언 등의 거부) ①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p> <p>③16세 미만의 사람이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p>

현 행	개 정 안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게 하지 않는다.
<p>제13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p> <p>②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증인출석 요구에 관해서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규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증인과 참고인의 경우에는 질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6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4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의 제출 요구 또는 증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p> <p>②그 밖에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 제5조의2, 제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4조(증인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제5조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p> <p>②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③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삭제></p> <p>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제6항</p>
<p>제15조(증언범위, 방식) ①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②증인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본 회의,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p>	<p>제7조(증언 등의 범위, 방식) ①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증인 등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해당 증인 등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②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진술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제3항에 의하여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⑤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8조(증인의 보호) <삭제></p> <p>(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p> <p><삭제></p> <p>(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p> <p>①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③변호인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17조(여비등 비용지급)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등에 대하여는 여비등 비용을 지급한다.</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산시의회의원 및 시 산하공무원 2. 제7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동조 동항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동조 동항 제5호가 정하는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3. 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중 소속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p>③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일당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p> <p>④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4호를 준용한다.</p> <p>⑤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p>	<p>제9조(여비 등 비용지급) ①제4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소속공무원 2. 소속기관 또는 단체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p><삭제></p> <p>②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이하 “여비”라 한다)는 일비 및 교통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숙박비, 식비로 한다.</p> <p>③여비 중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교통비 및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지급한다.</p> <p>④여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감사 또는 조사장소에 출석한 날부</p>

현 행	개 정 안
<p>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중인 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 한다.</p> <p>⑥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로 산정한다.</p> <p>⑤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 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18조(불출석등의 통보) 의장은 제11조제1항의 요구 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 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p>	<p><삭제></p> <p>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이 조례 27조</p>
<p>제1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 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 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p>	<p>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 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 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p>
<p>제20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 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p>	<p><삭제></p> <p>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p>
<p>제21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 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 다.</p> <p>②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 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 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 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p> <p>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 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p>	<p><삭제></p> <p>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p>
<p>제22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삭제></p> <p>참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p>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자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수 있다.</p>	<p>제11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 <삭제></p> <p>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항</p> <p>①영 제50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24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 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p> <p>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p> <p>③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자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삭제></p> <p>참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p>
<p>제25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p>	<p><삭제></p> <p>참조) 지방자치법 제86조,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p>
<p>제26조(고발) ①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12조(고발) ①의회는 제4조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7조(과태료)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p>	<p>제13조(과태료)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와 같이 부과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서에는 다음</p>

현 행	개 정 안
<p>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는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부과권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사실과 이의신청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부과권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⑥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내용과 증인의 의견진술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⑦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등은 지방자치법 제27조의 규정과 안산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되 그 세부절차와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등 필요한 서식은 부과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⑧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각 호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1. 의회가 증인에 대한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선서나 증언의 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p> <p>2.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사실</p> <p>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p> <p><삭제></p> <p>참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p> <p>⑤시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내용과 부과대상자의 의견진술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p><삭제></p> <p>⑥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8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p>	<p>제14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p>
<p>제29조(의회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9조 <삭제></p>

[붙임 3]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반복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사유에 해당없음.

4. 작성자 : 송바우나 의원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172
----------	-------

제안년월일 : 2019. 6. 24.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의 관련근거를 개정조례안의 조항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시행령」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간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함. (안 제6조제2항)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관련 근거를 개정조례안의 조항에 맞게 수정함. (별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제5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 제5조의2, 제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5조제3항·제4항·제6항·제8항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안 <별표> 중 “제27조 관련”에서 “제13조 관련”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6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생략)</p> <p>② 그 밖에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 제5조의2, 제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제5조제3항·제4항·제6항·제8항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p>																																																				
<p><별표></p> <p>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u>제27조 관련</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위반행위별</th>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1. 출석요구 불응</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td> <td style="padding: 5px;">400 ~ 500</td> </tr> <tr> <td style="padding: 5px;"> 나. 출석요구 불응 1회</td> <td style="padding: 5px;">300 ~ 400</td> </tr> <tr> <td style="padding: 5px;">2. 증언거부</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td> <td style="padding: 5px;">300 ~ 400</td> </tr> <tr> <td style="padding: 5px;">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td> <td style="padding: 5px;">200 ~ 300</td> </tr> <tr> <td style="padding: 5px;">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td> <td style="padding: 5px;">150 ~ 200</td> </tr> <tr> <td style="padding: 5px;">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td> <td style="padding: 5px;">100 ~ 150</td> </tr> <tr> <td style="padding: 5px;">3. 선서거부시</td> <td style="padding: 5px;">100 ~ 150</td> </tr> <tr> <td style="padding: 5px;">4. 서류제출 불응시</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 가. 서류제출 불응 1회</td> <td style="padding: 5px;">100 ~ 150</td> </tr> <tr> <td style="padding: 5px;"> 나. 서류제출 불응 2회 이상</td> <td style="padding: 5px;">200 ~ 300</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별	과태료	1. 출석요구 불응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400 ~ 500	나. 출석요구 불응 1회	300 ~ 400	2. 증언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300 ~ 400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	200 ~ 300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50 ~ 200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	100 ~ 150	3. 선서거부시	100 ~ 150	4. 서류제출 불응시		가. 서류제출 불응 1회	100 ~ 150	나. 서류제출 불응 2회 이상	200 ~ 300	<p><별표></p> <p>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u>제13조 관련</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위반행위별</th> <th style="text-align: left; padding: 5px;">과태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1. 출석요구 불응</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td> <td style="padding: 5px;">400 ~ 500</td> </tr> <tr> <td style="padding: 5px;"> 나. 출석요구 불응 1회</td> <td style="padding: 5px;">300 ~ 400</td> </tr> <tr> <td style="padding: 5px;">2. 증언거부</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td> <td style="padding: 5px;">300 ~ 400</td> </tr> <tr> <td style="padding: 5px;">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td> <td style="padding: 5px;">200 ~ 300</td> </tr> <tr> <td style="padding: 5px;">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td> <td style="padding: 5px;">150 ~ 200</td> </tr> <tr> <td style="padding: 5px;">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td> <td style="padding: 5px;">100 ~ 150</td> </tr> <tr> <td style="padding: 5px;">3. 선서거부시</td> <td style="padding: 5px;">100 ~ 150</td> </tr> <tr> <td style="padding: 5px;">4. 서류제출 불응시</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 가. 서류제출 불응 1회</td> <td style="padding: 5px;">100 ~ 150</td> </tr> <tr> <td style="padding: 5px;"> 나. 서류제출 불응 2회 이상</td> <td style="padding: 5px;">200 ~ 300</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별	과태료	1. 출석요구 불응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400 ~ 500	나. 출석요구 불응 1회	300 ~ 400	2. 증언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300 ~ 400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	200 ~ 300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50 ~ 200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	100 ~ 150	3. 선서거부시	100 ~ 150	4. 서류제출 불응시		가. 서류제출 불응 1회	100 ~ 150	나. 서류제출 불응 2회 이상	200 ~ 300
위반행위별	과태료																																																				
1. 출석요구 불응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400 ~ 500																																																				
나. 출석요구 불응 1회	300 ~ 400																																																				
2. 증언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300 ~ 400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	200 ~ 300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50 ~ 200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	100 ~ 150																																																				
3. 선서거부시	100 ~ 150																																																				
4. 서류제출 불응시																																																					
가. 서류제출 불응 1회	100 ~ 150																																																				
나. 서류제출 불응 2회 이상	200 ~ 300																																																				
위반행위별	과태료																																																				
1. 출석요구 불응																																																					
가.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400 ~ 500																																																				
나. 출석요구 불응 1회	300 ~ 400																																																				
2. 증언거부																																																					
가.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300 ~ 400																																																				
나. 증언 전체 거부 1회	200 ~ 300																																																				
다.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50 ~ 200																																																				
라. 증언 일부 거부 1회	100 ~ 150																																																				
3. 선서거부시	100 ~ 150																																																				
4. 서류제출 불응시																																																					
가. 서류제출 불응 1회	100 ~ 150																																																				
나. 서류제출 불응 2회 이상	200 ~ 300																																																				